

제 638 호
1977.12.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 |
|---|----|
| ◎ 조 례 | |
| 제 1205 호 : 서울교육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 | 3 |
| 제 1206 호 : 서울특별외계소관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 3 |
| 제 1207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 | 4 |
| ○ 제 1208 호 : 서울특별시 오불수거 수수로징수조례중 개정조례..... | 6 |
| ○ 제 1209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 7 |
| 제 1210 호 : 서울특별시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 | 9 |
| 제 1211 호 : 서울특별시예비조례중개정조례..... | 10 |
| ◎ 규 칙 | |
| 제 1731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 | 10 |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410

| | | | |
|---|-----------|--------------------------|----|
| ◎ | 고 | 시 | |
| | 제 461 호 : | 도시계획시설 (학교도로) 지적승인 | 15 |
| | 제 462 호 :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인가 | 15 |
| | 제 463 호 :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 16 |
| ◎ | 공 | 고 | |
| | 제 331 호 : | 환지예정지 일부변경인가및지정공고 | 17 |
| | 제 333 호 : | 유로도로통행로징수공고 | 17 |
| | 제 334 호 : | 도시계획시설 (녹지) 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 18 |
| | 제 335 호 : | 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 | 20 |
| | 제 336 호 : | 환지계획변경공고 | 20 |
| | 제 337 호 :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21 |
| | 제 338 호 :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21 |
| | 제 339 호 : | 전기용품제도업허가취소 | 22 |
| | 제 340 호 :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 22 |
| ◎ | 사 | 령 | 23 |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제 1205 호

서울교육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
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12.3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인

서울교육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위치) 의 제 1, 2호를 다음
과 같이한다.

1. 대성의 집 :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 번지

“별표”

2. 천마의 집 : 경기도 양주군
이금면 호명리산 1번지의 1호
제 5조 (하부조직)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서무
과, 교무과, 지도과를 부속시설인
기숙사에는 사감을 둔다.

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원으로,
교무과장, 지도과장 및 사감은 장학
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 6조 (경비부담) 중 “별표” 를
다음과 같이한다.

| 구 분 | 식비 (1인 1식당) | 숙박비 (1인 1식당) |
|------------|---------------|----------------|
| 국민학교 학생 | 200 원 | 200 원 |
| 중, 고등학교 학생 | 309 원 | 250 원 |
| 교 직 원 | 309 원 | 300 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의 별표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조례제 1206 호

서울특별시회계소관중요재산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12.3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 창 갑 인

제2조(중요재산의 범위)중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건당 예상가액 1,000만원 이상의 재산, 다만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평이상의 재산(예상가액 1,000만원이하 포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7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07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 공채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의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이하 "지하철공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지하철공채의 발행총액은 지하철제2호선 건설사업비의 2분의1이내로 하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

제3조(공채의 매출방법) ①지하철공채는 무기명식증권으로 발행하되 공채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5종이내로 한다.

②지하철공채는 권면금액으로 별표에 기재하는 바에 의하여 매출한다.

제4조(원금상환및 이자지급) ①지하철공채는 원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후 상환을 시작하여 5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한다.

②지하철공채의 이율은 년 10%이하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지하철공채의 이자는 제1항의 원금상환시마다 이를 지급한다.

제5조(매출및 상환업무 위탁) 지하철공채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금고의 본점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훈 인
1977년 12월 30 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08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에 따른 2차 인상분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오물수거수수료부과기준

| 구분 | 종별 | 등급 | 기준 | 금액 | | 비고 |
|----|------------------|-------|----------------|---------------|---------------|---|
| | | | | 1차인상 (78.1.1) | 2차인상 (78.3.1) | |
| 쓰 | 일반가정오물 (월액) | | 50명초과시 매 10명까지 | 100원가산 | 1100원가산 | |
| | | 1 | 30명이상 50명이하 | 300 " | 300 " | |
| | | 2 | 20 " 30명미만 | 250 " | 250 " | |
| | | 3 | 15 " 20 " | 200 " | 200 " | |
| | | 4 | 10 " 15 " | 100 " | 100 " | |
| 레 | 영업오물 (월액) | | 10명미만 | 50 " | 50 " | |
| | | 1 | 30명이상 50명이하 | 1,500 " | 2,000 " | 오물의자가수거의무자와 오물처리업자간의요율은 실비추당의범위내에서조정 허용할수있다 (단,본요율 30%이내) |
| | | 2 | 20 " 30명미만 | 1,200 " | 1,600 " | |
| | | 3 | 15 " 20 " | 900 " | 1,200 " | |
| | | 4 | 10 " 15 " | 750 " | 1,000 " | |
| | | 5 | 5 " 10 " | 450 " | 600 " | |
| 6 | 5명미만 | 300 " | 400 " | | | |
| 기 | 다량오물 (20명초과 영업소) | | 1톤까지 | 1,500 " | 2,000 " | |
| | | | 초과 1톤마다 | 1,500 " | 2,000 " | |
| 분 | 보 | | 18ℓ당 | 50 " | 50 "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77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09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제 2 조 및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진료수가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진료수가 및 약가기준 등)

①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 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진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별표에 열

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항의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입원환자의 식사대는 당해년도 예산서상의 금식액에 1 할을 가산한다.

제 3 조 (징수시기) 제 2 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은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 및 병원장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중 "별지 제 2 호 또는 제 3 호 서식"을 "별지 제 1 호 또는 2 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3 을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 및 제 3 호 서식을 각각 제 1 호 서식 및 제 2 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 | | |
|-----------------|-----------------------|-------------------|---|
| 기 본 진 료 료 점 수 표 | | | |
| (1 점 = 10 원) | | | |
| 분류번호 | 분 류 | 점 수 | 비 고 |
| 가-1 | 진찰권료 | 30 | ○ 기초진료로 (간단한 처치 및 처방 진료포함) 는 진찰권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없고 진료행위가 이 루어 질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 가-2 | 기초진료료 | 50 | |
| 가-1 | 입원실료 | | ○ 영안실료는 보호자측의 귀책사유 가 없는한 3일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
| | 가. 복실 | 700 | |
| | 나. 1인실 | 500 | |
| | 다. 2인실 | 300 | |
| | 라. 3인실 | 200 | |
| | 마. 4-5인실 | 150 | |
| | 바. 6인실 이하 | 120 | |
| | 사. 영안실료 | 200 | |
| 가-5 | 제증명료 | | ○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이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진료료와 동액으로 하고 별도의 검사를 요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 |
| | 가. 병사용 진단서 | 100 | |
| | 나. 상해진단서 | 300 ^{이상} | |
| | 다. 시체검안서 | 300 | |
| | 라. 시체부검표 | 2,000 | |
| | 바. 기발급증명사본 (1건당) | 20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명칭및 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1977년 12월 30 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10 호

서울특별시 동명칭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명칭및 구역 획정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도곡동 중 도곡동 산 6 번
지를 기점으로 도곡동 산 7 번지 까
지에 이르는 도로를 경유 남쪽으로
도곡동 36 의 3 호에 이르는 25 도
로와 양계천

(좌표 $x = 443,841.22$
 $y = 204,898.01$

$x = 443,731.81$ $x = 442,854.71$
 $y = 204,626.81$ $y = 204,958.06$

:점을

연결하는 도로 및 하천) 중심선의
동남지역을 강남구 대치동에 편입한
다.

강남구 개포동중 308번지를 기점으
로 도곡동 246 번지에 이르는 제 방
축조된 양계천 (좌표

$x = 443,562.10$ $x = 442,338.72$
 $y = 206,312.96$ $y = 204,275.70$

:점을 연결하는 하천)

중심선의 이북 지역으로서

도곡동 산 7 번지에서 도곡동 36 의 3
호에 이르는 25 도로와 양계천

좌표) $x = 443,731.81$
 $y = 204,626.81$

$x = 442,854.71$
 $y = 204,958.06$

:점을 연결하는 도로 및 하천)

중심선의 남쪽 지역은 강남구 대
치동에 편입하고, 서쪽 지역은 강남
구 도곡동에 편입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예비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1977년 12월 30 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11 호

서울특별시 여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 조중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에 따라"를 "국내 여비규정(대통령령)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6 조중 "별표 3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를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7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31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채의조제) ① 지하철 공채 증권은 매입 필증을 연결하여 조제한다.

② 증권의 번호에는 기호를 번호두에 권종별로 가 (5,000원권) 나 (10,000원권) 다 (50,000원권) 라 (100,000원권) 마 (1,000,000원권) 로 구분 기재하고 권종 말미에는 권종구분 없이 "가"로 기재한다.

제 3 조 (공채증권및 매입필증 기재사항) ① 공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 |
|---|--|
| <p>1. 공채의 명칭, 번호, 액면 금액 및 이율</p> <p>2.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p> <p>3. 공채 매출점 및 매출일</p> <p>(2)매입원증에는 공채의 금액과 번호, 매입자성명, 용도, 청구기관, 매출점 및 매출일을 기재한다.</p> <p>제 4 조 (공채증권의 관리) ①공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하 철 본부장)이 관장한다.</p> <p>(2)시장(이하철본부장)은 공채증권을 매출은행 총발점에 공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 5 조 (공채증권 관인의 효력) 공채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공채증권에 인쇄된 인명으로 가름한다.</p> <p>제 2 권 매 출 업 무</p> <p>제 6 조 (공채매출공고) 공채를 매출코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1. 공채의 명칭, 매출방법, 총액, 권중별 액면금액, 비율</p> <p>2. 매출점, 장소</p> <p>3.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p> <p>4. 매출 기간</p> | <p>5. 매입 대상자</p> <p>제 7 조 (공채매주기판) ①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채의 매수 및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산업은행(본, 지점 및 예금 취급소)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점"이라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매출한다.</p> <p>(2)공채 매출점에서는 한국산업은행 태평로 지점(시금고과)으로 부터 소요 공채를 수시로 인출받아 이들 공채 매입자에 매출한다.</p> <p>제 5 조 (공채의 매출일) 공채의 매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 한다. 단, 실제 매출일로 부터 매출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p> <p>제 9 조 (매입원증의 청구 기관) ①시장(구증장소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 별 표에서 재기한 공채 매입자로부터 관계서류 접수시에 매입원증을 청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2)전항에 의하여 청구한 매입원증은 소인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p> |
|---|--|

제 10 조 (공채증권의 보증 기재) 공채와 매입필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매출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증 기재 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

가. 매출년도

나. 발행일 및 상환일

다. 매출점

라. 실제 매출일

2. 매입필증

가. 매입자 성명

나. 용도

다. 징수기관

라. 매출일

마. 매출점

제 11 조 (공채 원부의 작성 비치)

시장은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기관으로 부터 받은 매출 상황 보고에 의하여 공채원부함 작성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종

2. 공채의 번호, 액면금액, 이율, 매출일

3. 원리금 상환일

4. 매입필증 기재 사항

제 12 조 (기재사항의 정정금지) ①공

채와 매입필증의 기재 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공채와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서순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공채이면의 발행 조건의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 (공채의 매출 상황 보고)

(1)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장 (시 금고과) 은 매출점에서 매출한 공채 (원리금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수합하여 매출일로 부터 2 일째 되는 오전 12 시까지 일보로써 시장 (지하철본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채 매출일보에 의하여 공채 발행원부를 정리한다.

제 14 조 (매출금관리) ①시장은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장으로 부터 받은 공채 매출일보를 즉시 지하철 운수사업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을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공채 매출 대금을 세입금으로 수납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채매입면제) 국민주택 채

권의 매입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제 3 절 상 환 업 무

제 16 조 (원리금상환) ①공채원금의 상환일은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 해당일로 한다.

②공채이자는 매출일의 이율로 거치기간의 이자는 1년 단위부터 계산하여 원금 1차 상환과 동시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년리로 계산하여 매년 원금과 같이 계산한다.

③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원리금 상환장소)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상업은행 본지점 및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상환한다.

제 18 조 (공채의 중도상환) 공채는 중도에서 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당해 변허, 인가, 상수도 급수 신규신청 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철회되거나 등록의 신청이 기각, 반려작하 또는 철회시 그 사무를 취급한 기관이 사실증명을 발급

한 경우

2. 착오로 인하여 공채매입자가 아닌자가 매입 하였거나 소정의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과도 매입한때에 그 사무를 취급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즉시 착오 사실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당해 매입필승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경우

제 19 조 (공채상환 공고) 공채원금의 상환은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 4 절 보 칙

제 20 조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공채 및 매입필승의 분실, 도난, 멸실, 내손능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승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권한의 공채는 공시 최고액의 철차에 의하여 부효로 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재판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 (중권의 보존기간) 공채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내 용 | 보 존 기 간 |
|----------|--|---------------|
| 1. 전양공채 | 완성된 공채로서 "전양"이라는 분자가 표시된 공채 | 공채매출마감일로부터 2년 |
| 2. 마납행공채 | 완성된 공채로서 매증년도, 매출일및 상환일을 보증 기재하고 매출책임자의 기명, 직인, 날인, 하면 매출할 수 있는 공채 | , |
| 3. 상환공채 | 상환을 필한 공채 | 상환일로부터 2년 |
| 4. 불용공채 | 형식 전환공채, 서손공채와 기타 사유로 사용불가능한 공채 | 불용된날로부터 6월 |

| | |
|--|--|
| <p>제 22 조 (공채 증권의 처분) ①시장은 전조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을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 (시금교과) 으로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p> <p>②공채증권 처분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p> <p>제 23 조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공채의 원리금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p> <p>제 24 조 (공채매출업무 감독) 시장은</p> | <p>공채 매출및 상환업무의 적정관리를 기하고 매출 과정에 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공채 매출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행하게 할수 있다.</p> <p>제 25 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업무취급 요령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지적승인

1. 동대문 구청관내 도시계획 시설
(학교 및 도로)가 서고시 제
439 호 (77.12.19) 로 결정되었
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

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
3.16)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
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 학교지적승인 내역

| 구분 | 시 설 명 | 위 | 치 | 면 적 (㎡) | 비 고 |
|----|--------|-----------|--------|---------|-----|
| 신설 | 군자국민학교 | 동대문구 장안동 | 237-15 | 13,934 | |
| " | 이문 | 동대문구 이문동 | 164-26 | 15,550 | |
| " | 전농 | 동대문구 전농동 | 32-11 | 16,364 | |
| " | 중암 | 동대문구 용두동 | 192-1 | 16,473 | |
| " | 홍농 | 동대문구 청량리동 | 산1-142 | 14,876 | |
| " | 북동 | 동대문구 중화동 | 277~1 | 12,218 | |

나. 도로 지적승인 내역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시 점 | 종 점 | 비 고 |
|----|----|----|----|-------|-------|----------|----------|-------|
| 기정 | 소로 | 3 | | 6 | 105 | 중화동280-7 | 중화 280-7 | 북동국교내 |
| 변경 | " | 3 | | 6 | 105 | 중화동280-7 | 중화 280-7 | 도로제지 |

1977.1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46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실시계획인가

1. 서공고 제 307(77.12.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

고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39
번지 일대 청량국민학교앞도로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외 권한 위임 규정에 외거 이를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토목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77.12. .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이문동
339-20-341 - 1번지간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개
설)
명칭 : 청량국민학교앞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규모 : B=3 M L=225 M
도로개설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동대문
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77.8-
78.6.30
- 6. 사용토는 수용한토지 및 건물 : 별
첨조서 (생략)
- 7. 토지 또는 토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생략)

◎ 서울특별시 도시제 46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
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
음함.
-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1977.12.3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 위치 : 동대문구 제기
동 712번지 - 제기동 137,177번지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흥파국교 - 교대
앞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규모 : [폭 = 25 m
연장 = 452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5. 착수및준공예정일 : 1977.12.16 ~
1978.12.30.
- 6. 사용토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31 호

환지에정지 일부 변경인가
및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306 호 (77.12.7) 로 공고한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이 없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에정지로 지정하였기 이에 공고 합니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조서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 관

다 음

- 가. 사업명 :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나. 변경위치 : 257 구획과 251 구획 사이도로 (B= 8 m L= 41.5 m)
251 구획과 236 구획 사이도로 (B= 6 m , L= 42 m)
- 다. 변경도서 : 열락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333 호

유로도로 통행로 징수 공고

서울특별시 관내 유로도로 (강변로) 통행로 징수 기간을 연장하였거 유로도로법 제 10 조 및 동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7. 12.

서울특별시 강 구 자 **출**

1. 통행로의 징수자 : 서울특별시 관
2. 유로도로의 구간
자. 성동구 금호동 4가 2-1
지. 성동구 성수동 1가 693
3. 통행로의 징수기간
현행 71. 1. 1-77.12.31
변경후 71. 1. 1-83.12.31

4. 통행료의 징수대상과 그 금액

| 대 상 | 금 액 |
|--------------------|------|
| 2.3륜차 | 50원 |
| 승용차, 버스, 화물차 | 100원 |
| 특수차 (10톤이상 화물차 포함) | 200원 |

5. 통행료의 면제 받는 차량

가. 군용 및 군 작전용 차량

나.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다. 교통, 단속 차량

라.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종사하는 차량

마. 통신관서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 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국민으로서 외국사절과 그 경호용 차량

사.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용 차량

6. 통행료의 징수 방법

현금 또는 회수권으로 요금소에서 징수

◎서울특별시공고제 334 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실시 계획 변경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 호 (76.3.24)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특수 녹지대) 건설공사 구내 저속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에 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2 호 (76.7.27) 공고 사항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12.30

서울특별시장

변경공람개요

1. 사업시행의 위치 : 마포구 성산동 산 53-7 의 98 필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특수녹지대

3. 사업의 규모 :

○ 입 지 963,894 ㎡

○ 1차조성범위 225,077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구분 | 당 초 | 년 경 | 비 고 |
|-----|---------|---------|-----|
| 착 공 | 76.8.15 | 76.8.25 | |
| 준 공 | 77.8.31 | 78.8.31 | |

6.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주소, 선명 : 다음

토지 세목 및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조서

77.1.20 현 제

| 입현 번호 | 원 | | | 수 용 | |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 | 비 고 |
|----------|-------------------|--------|--------|--|----|--|--------------|----------------------------------|--------------------|---------------|
| | 지번 | 지목 | 지적 | 지번 | 지목 | 지적 | 구분 | 주소 | 성명 | |
| 1 | 마포구정산 동 산 53-7 | 임 야 | 2.5115 | 정 마포구 상산동 산 53-12 " 산 53-7 " 산 53-13 " 산 53-18 | 임야 | 4,476 평 2,168 " 2,414 " 136 " | 소 지 유 | 광주시호남동 23 중구충무로 1가 53-1 | 이은용 계일은행 (주) | 매입 산 53-12 |
| 2 | " 산 55 | " | 0.0300 | " 산 55 | " | 90 " | 소유 | 개성부 | 김시선 | 소재불명 |
| 3 | 상암동 산 4-15 | " | 0.6302 | 상암동 산 4-15 " 산 4-15 | " | 60 평 183.2 " | " | " | " | 국(국예청) |
| 4 | " 산 4-19 | " | 0.1004 | 과 동 | " | 과 동 | " | " | " | " |
| 6 | " 산 4-24 | " | 1.8911 | " 산 4-192 " 산 4-24 | " | 508 평 5,173 " | " | " | " | " |
| 6 | " 산 4-63 | " | 0.0138 | 과 동 | " | 과 동 | " | " | " | 갈천회 대장 |
| 7 | " 산 4-64 | " | 0.0524 | " | " | " | " | " | " | " |
| 8 | " 산 4-147 | " | 0.0014 | " | " | " | " | " | " | " |
| 9 | " 산 4-77 | " | 0.0488 | " | " | " | " | " | " | 국(국예청) |
| 10 | " 산 4-176 | " | 0.2406 | " | " | " | " | " | " | " |
| 이 하 생략 | | | | | | | | | | |

◎ 서울특별지공고제 335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장안평 지구 및 영농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제 55 조 제 33 조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 송달은 별도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7. 12. 30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장안평 지구 및 영농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농대문구 장안동 일부 토지

· 성동구 군자동 ·
· 관악구 박배동 ·

3. 변경조서 및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

◎ 서울특별지공고제 336 호

환지계획 변경공고

1.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것이나, 미수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장

| | |
|--|--|
| <p>(환지 변경 내용)</p> <p>가. 사업명 :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변경</p> <p>나. 변경면적 : 5,709.4 명</p> <p>다. 변경위치 : 1) 강남구 삼성동 5의 60호 107필지 2) 67구획 중학교용지 (5,150명)</p> <p>라.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7호에 의거(77.11.29) 삼성동 5의 60호의 107필지에 학교용지로 추가 시설경정되고 67구획중학교 용지가 폐지됨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게되었음. 끝.</p> | <p>3. 본 공고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p> <p>1977. 12. 서울특별시 강 (환지 계획 변경 내역)</p> <p>가. 사업명 : 영농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p> <p>나. 변경면적 : 9655.1 명</p> <p>다.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 산 41의 45호의 84 필지</p> |
| <p>㉞ 서울특별시공고제 337 호</p> <p>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p> <p>1. 영농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p> <p>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 <p>㉞ 서울특별시공고제 338 호</p> <p>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p> <p>1. 영농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려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p> <p>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3. 본 공고내용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p> |

할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
(확지 계획 변경 내역)

가. 사업명 :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30,900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서초동 52의 2호
외 135필지

◎ 서울특별 시공고제 339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하고, 동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7. 12. 30

서울특별 시장

다 음

| 업체명 | 대표자 | 허가번호 | 소재지 | 허가일 | 제조구분 | 취소사유 |
|-------|-----|--------|--------|--------|----------------|--------------|
| 유진공업사 | 백무부 | 1-6-31 | 성동구성수동 | 77.6.3 | 전동기류 | 법정기간 |
| | | 1-8-68 | " | " | 전동력·용 기계기구류 | 내형식승 인미취소 |

◎ 서울특별 시공고제 340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21조 규정에 의거 KS (한국공업
규격) 표시정지처분된 다음 업체에 대
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
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77. 12.

서울특별 시장

1. 허가번호 : 885
2. 허가일자 : 73.12.26
3. 제조업체명 :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
4. 대표자 : 장영신
5. 소재지 : 영등포구 구로동 501
6. 규격번호 : 5317
7. 품 명 : 조합페인트담색 3종
8. 처분일자 : 77.9.6
9. 해제일자 : 77.12.30

사 령

◎ 1977.12.30

강 원 도 원 세 훈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 1978.1.1

연 로 시 험 소 김 상 열
지방행정주사

연로시험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종 로 구 하 건 철
지방행정주사

종로구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문 화 공 보 관 임 순 태
지방행정주사보

조달청 전출을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